

# 가축분뇨 처리방법 법령안내



**손 재 호**

서울유유 지도부 낙농사업과

## I. 글을 시작하면서

낙농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때때로 나는 마치 자신이 목장주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사양관리를 개선하면 젖이 더 많이 나오겠지" 하는 생산성을 높이고 수익을 증가시키는 행복한 생각을 하지만, 가축분뇨와 관련된 생각을 하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많다.

1999년 2월 8일부로 새로 제정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여름에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한강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모범이며, 가축분뇨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법 가운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도 이번에 같이 개정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 법들이 어떠한 법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로 낙농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식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 II. 중간글

###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내

〈문 1〉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어떤 법입니까?

〈답〉 이 법 제1조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

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32호로 제정된 법으로 8월 8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으며 이 법에서 축산농가와 관련이 깊은 수변구역(水邊區域)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태이나 수변구역등의 지정이 완료되면 8월 9일을 전후로 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공포될 예정이다.

〈문 2〉 수변구역이란 무엇이고 어느 지역입니까?

〈답〉 수변구역이란 한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한강의 양쪽 강변으로부터 500~1,000m를 정하여 오염물질이 자연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완충지역으로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 ① 팔당호
- ② 남한강 : 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
- ③ 북한강 : 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
- ④ 경안천 :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용인군 모현면의 면계로부터 한강까지의 구간

위 구간중 현재 환경기본법 제22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양쪽의 강변으로부터 1km까지의 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대책지역외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 및 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

〈문 3〉 수변구역내에서 신규로 낙농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원칙적으로는 〈답 2〉와 같이 지정·고시된 수변구역내에서는 용도변경을 포함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 운동장)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다.

수변구역중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어 당해 하천 또는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신규설치가 불가하다.

##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안내

〈문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란 법은 어떤 법입니까?

〈답〉 이 법의 제1조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에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생활 오폐수 및 축산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분뇨의 처리방안과 규제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문 2〉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퇴비화시설 그리고 저장액비화시설은 어떠한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축산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배출되는 시설 및 장소 등에서 축사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시설

- “퇴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

를 발효하여 퇴비로 만드는 시설 - “저장액비화시설”이라 함은 축산폐수를 저장하여 액체상의 비료로 만드는 시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종 처리시설은 환경부령에 의해서 처리되는 방식만 처리시설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3〉 규제대상별 축산폐수배출시설(축사 및 운동장) 규모가 변경되어 간이축산폐수정화조 대상이 삭제되었다는데 현재 간이대상농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 축산폐수관리체계가 축사 규모별로 허가대상, 신고대상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으로 규정하던 것을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단순화하여 규제를 강화하였다.

기존의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은 변경된 사항이 없으나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대상이었던 목적은 신고대상으로 강화되어 1999년 6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부칙 4조에 의해 축산폐수처리시설로 인정하므로 축사면적의 증가가 없었다

〈표 1〉 규제대상별 축산배출시설 규모(젖소사육시설)

규제대상	규 모
허가대상	축사 900㎡(약 272평) 이상 또는 운동장 2,700㎡(약 816평)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축사면적 450㎡(약 136평) 이상 또는 운동장 1,350㎡(약 408평) 이상
신고대상	축사 100㎡(약 30평) ~ 900㎡(272평) 미만 또는 운동장 300㎡(90평) ~ 2,700㎡(약 816평)미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는 축사 100㎡(약 30평) ~ 450㎡(약 136평) 미만 또는 운동장 300㎡(약 30평) 1,350㎡(약 408평) 미만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등이라 함은 다음 지역 및 구역을 의미한다.

- 1)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 2) 호소수질보전구역
- 3) 취수시설로부터 유거리 4km이내의 상류지역
- 4) 상수원 및 공원보호구역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신청 구비서류

-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별지 제19호 서식)
-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표준설계도서 1부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저장액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 1부

면 별도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

〈문 4〉 기존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능가가 설치신고를 한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도 신고규모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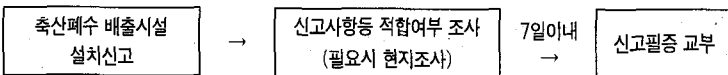
〈답〉 아직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령과 개정규칙이 공포되지 않아 최종적인 사항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개정규칙(안)에 의하면 기존의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능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류수 배출기준(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1,500mg/l 이하)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참고로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규제대상별 방류수 수질기준은 〈표 2〉와 같이 강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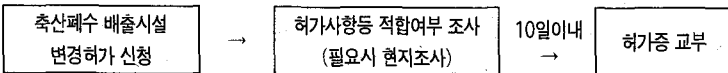
〈문 5〉 축산폐수 때문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규제를 가할 수 있다던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4조

###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업무처리 절차



### 변경허가 업무처리 절차



〈표 2〉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	1999년 12월 31일까지		2000년 1월 1일부터		
	허가대상	신고대상	허가대상	신고대상	
특정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50	350	50	150
	부유물질량 (mg/l)	50	350	50	150
	총질소 (mg/l)	-	-	260	-
	총 인 (mg/l)	-	-	50	-
기타지역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mg/l)	150	500	150	350
	부유물질량 (mg/l)	50	500	150	350

제1항 내지 제3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축산폐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특히 이 조문은 최근에 신설된 내용으로 하류지역의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 대책 지역 등에 대한 가축의 신규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 6〉 이번에 낙농을 시작하려고 다른 사람이 하던 목장을 양도받았습니다. 축산폐수에 관해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동법 제25조의 3에는 양도, 사망이나 합병에 의한 법인설

립시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어떻게 되는 지가 나와 있다. 여기서 목장을 양도받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사항을 신고하면 되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게 된다.

〈문 7〉 제 경우에는 착유장 50평, 착유우용 우사 120평, 육성·건우우용 우사 80평, 운동장 4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규모에 속하는 것입니까?

〈답〉 먼저 자신이 낙농을 하는 지역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 속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규제가 상당히 심하다.

동법 시행령의 제11조 별표 1항에서는 허가규모를 축사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으로 보고 있으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일 사업장안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당해 시설의 규모로 하므로 이 목장의 경우에는 우사(착유장+착유우사+육성우사)가 250평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1㎡은 0.3025평으로 환산되어 250평은 826.45㎡이므로 신고규모이다. 하지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면 허가규모가 된다.

〈문 8〉 신고규모인 목장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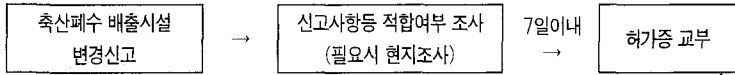
〈답〉 신고규모인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변경신고 대상**

- 변경전 신고
  -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이상 증설하는 경우
  -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종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후 15일 이내 신고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저장액비화 방법에 의한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p><b>변경신고 신청 구비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li> <li>· 가축사육두수와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li> <li>·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li> <li>· 기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li> </ul>
---

**변경신고 업무처리 절차**



〈문 9〉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 치의무란 무엇인가요?

〈답〉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 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축산폐수 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축산업자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한다면 농가에서는 규모에 따라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축산폐수를 처리한 후에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10〉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업자가 너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군요. 제가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답〉 동법 제26조와 제27조에 의하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방지사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무분별한 시설의 설치를 막고 일정 기술수준 이상을 가진 업자들만이 시공하게 하므로써 배출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보장하고 안정된 처리시설의 운용

을 가져오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설계도서에 의하여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 표준설계 도서에 나타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로 재료나 재질을 교체해서는 안된다.

〈문 11〉 옆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밤에 몰래 트럭으로 버리다가 적발되서 경찰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답〉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특히 장마철이나 비가 오는 밤에는 가끔 그러한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항과 제3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이며 또한 그 중에서도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외의 장소에 버린 때에 해당되므로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표 3〉

〈문 12〉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운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폐수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습니다. 고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군요. 그 동안에 방출되는 폐수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최대한 빨리 고장부위를 고

〈표 3〉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 징 금 금 액 (만 원)
수집·운반한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외의 장소에 버린 때	법 제19조 제2항	2,000
기타 수집·운반기준을 위반한 때		800
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때	법 제32조 제2항	2,000
기타 분뇨처리 기준을 위반한 때		800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또는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1항 법 제23조 제2항	1,000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법 제35조 제1항	1,000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때	법 제35조 제1항	1,000
시설·사업장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검사를 방해한 때	법 제46조 제1항	800

〈표 4〉 규제대상별 축산배출시설 규모(젖소사육시설)

배 출 기 간	배출량(m <sup>3</sup> /일)	
	소(젖소포함)·말 : 6미만 돼지 : 16미만	소(젖소포함)·말 : 6이상 돼지 : 16이상
20일 미만	30만원	40만원
20일 이상	40만원	50만원

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개선, 변경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나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상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는『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관한 자진신고』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이 명시된『개선계획』과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자진신고를 할 수 있

고,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하고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지정하여 개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관한 자진신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방출한 폐수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처리부과금도 상당액수가 감해진다.

〈문 13〉 15일간 해외 선진 낙농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보니 정화시설이 12일전에 고장이 났다고 하더군요. 이미 환경부에서 10일전에 처리가 되지 않은 폐수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갔답니다. 어떻게 처리 되겠습니까?

〈답〉 배출부과금이 부과된다. 세 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축산배출시

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즉 농가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때에는 배출부과금을 납부해야 하며(무허가인 경우에도 같다), 환경부장관은 축산업자로부터 배출부과금을 징수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기금에 이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유기물질(생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로, 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은 우선 가축사육 두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를 참조한 일일배출량과 배출기간을 고려해서 기본부과금을 내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처리부과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되어있다.

〈문 14〉 아랫동네에 있는 김이 와서 우리 우사에서 축산폐수가 흘러 목장밑에 있는 배나무가 다 죽었다고 저를 고소했습니다.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요?

〈답〉 배나무가 죽었으므로 김은 법률용어로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용해서 소송을 한 것 같다.

이러한 경우에 우사로부터 유출되는 축산폐수가 과수원에 유입되어 과수원의 배나무에 대한 김의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당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문의하신 분은 축산폐수를 방류하지 않을 의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배수로 등)을 설치할 의무, 그리고 오염상태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사건이고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소송비용과 송달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완제하는 날까지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김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 15〉 저희 집에서는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군청에 신고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합니까?

〈답〉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경우다. 그러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1일 1톤 이상을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 개시 이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목장에서 발생된 축산폐수를 자체처리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군청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판매는 불가능하다.

〈문 16〉 저는 착유우 20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저장액비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농경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논 2,000평, 밭 10,00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장액비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답〉 자가 저장액비화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 소유의 초지 또는 농경지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면적은 초지는 1,240㎡/두, 논 2,360㎡/두

그리고 밭은 1,530㎡/두 이상이다.

그리고 1㎡은 0.3025평으로 환산되므로 문의하신 분이 사육할 수 있는 최대두수는 논이 2.8두 그리고 밭이 13.5두이다. 따라서 16.3두가 사육할 수 있는 최대 두수이므로 저장액비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장액비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7두분에 해당하는 논이나 밭을 추가 구입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초지나 밭을 임대하여 임대한 토지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

### Ⅲ. 글을 마치면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후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금년 8월 8일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법에서 특히 낙농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고려할 내용은 수변구역(水邊區域)의 지정과 동 구역내의 각종 행위(축사, 도축 및 음식점 등의 폐수배출시설의 신규 설치 및 용도변경)의 제한 그리고 상수원의 이용자 즉 수도권 지역 주민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반 법조문들을 개정하고 합병정화조를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삭제하며, 가축분뇨의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법적인 지원강화를 위한 개정이 이

번 개정의 주안점이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부칙 제1조 4항을 보면 기존의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1999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새로이 지정될 지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모든 법조항이 적용된다는 부분이다.

이 내용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 시점 이후에는 수변구역에서는 신규로 낙농을 할 수 없고, 사육두수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간단한 예를 보더라도 이 법들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가 쉽게 알 수 있다.

가축의 사육은 필연적으로 분뇨와 청소 등에서 폐수를 발생시키게 된다. 지금까지는 환경문제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호당 사육두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에 큰 부담이 되질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가축분뇨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이상 낙농가는 오염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축분뇨를 배출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면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이 오염물질로 가축분뇨를 보고 있는 이상, 이러한 편견과 직면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낙농가 스스로가 가축분뇨와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우리들에게 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필자연락처 : 02-433-8151〉